

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개정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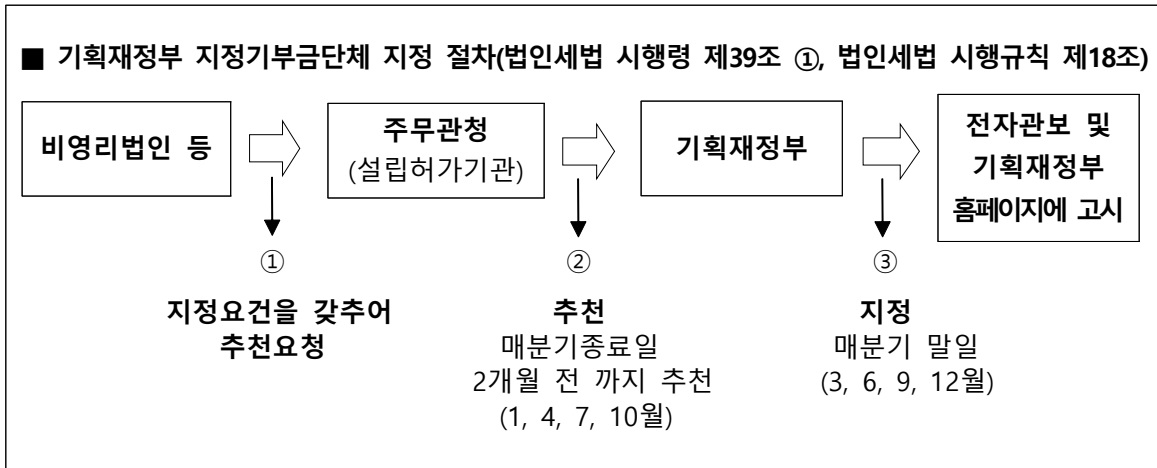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 및 배경

- 종전(2018. 2. 13. 이전)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만 「법인세법」 상 의무이행 대상이었으나, 2019. 1. 1.부로 의무이행 대상 단체 변경

■ 의무이행 확대 단체

- 사회복지법인,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·고등·대학교(기능대학, 평생교육시설 포함), 의료법인, 정부 인·허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단체와 **문화·예술·환경보호운동단체**, 기획 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공공기관(공기업 제외)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

- 이에 따라 2018. 2. 13.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'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은 학술연구·장학·기술진흥단체와 문화·예술·환경보호운동단체' 등은 2020년까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지만, **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아야 함**



2. 관련근거

-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정관 제42조(정관의 변경)
 -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3. 주요 개정내용 및 사유

○ 개정 내용

- 제40조(결산) ④항 신설

- 내용 :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- 사유 :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,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하여야 함

■ 「법인세법」시행령 제39조상 준수해야할 의무사항

1.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(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함)
 - (1)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
 - (2)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,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
 - (3)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
2. 위 1.(1)의 내용을 이행할 것
3.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

- 이하 생략 -

- 제44조(잔여재산의 귀속) 개정

- 내용 :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 →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변경
- 사유 : 기존의 정관 내용 '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'는 포괄적 정의이므로,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기 위하여 단체의 정의를 '비영리법인'이라 한정할 필요가 있음

4. 향후 추진계획(안)

- 2020. 10월 중 : 시의회 상임위원회 사전보고
- 2020. 12월 중 : 이사회 '정관 개정(안)' 의결
- 2021. 1월 중 : 서울시 승인 통보 후 소관 구청에 신고

〈정관 신·구 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40조(결산)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	<p>제40조(결산)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</p> <p>②재단은 결산완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결산보고서에는 업무현황,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④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</u></p>
<p>제44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목적이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.</p>	<p>제44조(잔여재산의 귀속)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서울특별시 또는 <u>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</u>에 기증한다.</p>